

제8장
경제협력

제8.1조
기본원칙

1. 이 협정에 따른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,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의 상이한 발전 수준과 역량을 고려하여 상호 관심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한다. 지역 및 세계 가치사슬에서의 양 당사국의 역할을 심화하고 확장하기 위하여 경제적 상보성을 향상시킬 역량 강화에 특별히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.
2. 이 협정에 따른 경제협력의 이행을 증진하고 원활히 하기 위하여, 양 당사국은 각 정부 간의 조정을 수행하며,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 어느 한쪽 또는 양쪽 상대방이 양 당사국의 정부가 아닌 기관 간의 협력을 장려하고 촉진한다. 양 당사국이 상호 관심을 가지는 협력 분야에 대한 양 당사국의 상호 이익에 기초하여, 양 당사국은 적절한 형태의 활동으로 협력할 것이다.
3. 양 당사국 간에 진행 중인 경제협력 이니셔티브의 가치를 재확인하면서, 양 당사국은 이 협정 외의 틀에 따른 기존의 경제협력을 존중하고 지속하며, 업무나 활동의 중복이 없을 것임을 보장한다.
4. 양 당사국은 각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이 협정에 규정된 경제협력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규정들을 인정한다.

제8.2조
협력 분야

1. 양 당사국은 상호 이익에 기초하여 협력활동을 발굴하고 수행한다.
2. 산업 관련 분야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.

가. 자동차

나. 철강 및 금속

다. 화학제품

라. 정보통신기술

마. 전자제품

바. 기계

사. 의류, 섬유 및 의복

아. 선박

자. 항공기

차. 식품 및 음료, 그리고

카.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협력 분야

3. 농업, 수산업 및 임업 관련 분야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.

가. 축산 및 작물 생산

나. 수산업 및 임업 분야에서의 투자여건 개선

다. 각 당사국의 관련 국내 법과 규정에 따른 수산업 및 임업 분야 투자자의
수요 충족

라. 산림 관리

마. 농업 기반 및 식품 가공, 그리고

바.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협력 분야

4. 무역 규칙 및 절차 관련 분야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.

가. 표준,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

나. 위생 및 식물위생

다. 통관절차

라. 원산지 규정 및 그 밖의 관세양허 이행의 측면

마. 지식재산, 그리고

바.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협력 분야

5. 자연인의 이동 관련 분야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.

가. 전문가, 그리고

나. 연수생

6. 그 밖의 협력 분야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.

가. 중소기업 지원 정책

나. 통계

다. 공정 경쟁

라. 사회기반시설

마. 투자

바. 과학, 기술 및 혁신

사. 문화 및 그 밖의 창의적인 분야

아. 에너지 및 광물 자원

자. 보건의료

차. 환경

카. 건설 서비스, 그리고

타.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협력 분야

제8.3조

협력 형태

경제협력의 형태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으나,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.

가. 기술 지원

나. 인적자원 훈련

다. 데이터 및 정보 교환

라. 전문가 교류

마. 주제 세미나 및 워크숍

바. 제도의 설계 및 개선

사. 분야별 종합추진계획 수립

아. 발전전략 수립

자. 모범사례 공유

차. 기초연구

카. 공동연구 및 개발

타. 공동의 무역 및 투자 증진 활동

파. 모델 및 기술 이전, 그리고

하.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협력 형태

제8.4조

이행

1. 협력은 각 당사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이행된다.

2. 이 장의 효과적인 이행 및 운영을 위하여, 양 당사국은 경제협력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하고, 위원회의 기능 및 절차를 규정하며 기존의 양자 경제협력 사업, 계획 및 활동을 강화하고 보완하는 이행약정을 체결한다.

3. 양 당사국은 상호 합의된 기간에 양국의 우선순위에 따라 협력사업을 수행한다. 그 사업은 의도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의하여 감독 및 검토된다.
4. 양 당사국은 상이한 발전 수준과 역량을 고려하며, 상호 이해 또는 합의에 기초하여 적절하게 이행 비용을 부담한다.
5. 협력 분야의 이행을 위한 자금조달은 이행약정에 상세하게 규정된다.

제8.5조 경제협력 자원

1. 양 당사국은 이 장의 이행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채택하기 위하여 협력 한다.
2. 양 당사국은 각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이 장의 경제협력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자원 및 그 밖의 자원이 이용 가능하도록 노력한다.
3. 이 장에 따른 경제협력을 위한 자금조달은 양 당사국의 상이한 발전수준을 고려하여 상호 합의에 따라 부담된다.

제8.6조 분쟁해결

어떠한 당사국도 이 장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 제10장(분쟁해결)을 이용하지 않는다. 이 이행약정의 해석 및 이행과 관련된 양 당사국 간의 모든 분쟁은 협의를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된다.